

영등포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8. 11. 6.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 되고 「기구정원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개정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기구 증설과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 5급이상 정원 : 조례로 정함
  - 6급이하 정원 : 규칙으로 정함

##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 됨에 따라 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 부족 시나 결원 시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며  
다만, 우리구 행정조직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1. 6.

보고자 : 권 오 운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